

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

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‘지원자 유의사항’ 관련)

◆ 아포스티유 협약

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,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(Legalization)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.

-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
(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)

1. 가입국 출신 최종합격자 아포스티유 제출

- 제출서류 : 학사 학위(졸업)증명서
- 발급기관 :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**+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**
[참고]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www.hcch.net – Apostille Section을 참고
- 제출방법 : 위 제출서류에 대한 “아포스티유 확인서”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
[참고]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“국외교육기관확인서” 또는 “영사확인”으로 대체 가능함.
- **중국대학(원) 졸업자의 경우**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 또는 중국 교육부 학위인증센터(CHSI)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에 대하여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
(<http://www.chsi.com.cn> 참고)

2. 미가입국 출신 최종합격자

- 제출서류 : 학사 학위(졸업)증명서
- 발급기관 :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
- 제출방법 : 위 제출서류에 대한 “국외교육기관확인서” 또는 “영사확인”을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

3. 주의사항

-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(또는 공인 외국인 번역 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)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.